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0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이소영·김성환·김정호

복기왕 · 김태년 · 박정현

황 희·김한규·박지혜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출방법 등에"를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제5항에 따른 공표 등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

로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	3
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	
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u>온실가</u>	결과 보고
<u>스 감축 계획</u> 을 작성하여 위원	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4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	
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	
여야 <u>한다</u> .	<u>하며, 이를</u> 반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위원회는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
	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u>⑤</u>	제1항에	따른	이행형	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	과 보	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	에 따른	온실
가스	: 감축	계획으	<u>제출</u>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은 대
통령	령으로	정한디		

-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 략)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u>⑥</u>
<u>제출 방법, 제4</u>
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제5항에 따른 공표 등에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u>수립하거나 변</u>
<u> 경하려는 경우</u>
②
<u>려는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 시	서〉
\sim \sim	一 ラ ノ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 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u>⑤</u> <u>제4항까지의</u>
<u>.</u>